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1033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성원

변론 종결2020. 12. 23.

판결 선고2021. 2. 17.

주 문

- 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6. 5. 접수 제248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는 대한민국(정보통신부)으로부터 국민컴퓨터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1. 8.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C	C
피보험자	대한민국(정보통신부)	대한민국(정보통신부)
보험가입금액	2,410,000원	2,630,000원
보험기간	2001. 8. 23.부터 2004. 8. 21.까지	2001. 8. 23.부터 2004. 8. 21.까지

2) C가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자 대한민국(정보통신부)은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정보통신부)에게 2002. 2. 15.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70,410원,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68,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2. 9.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33105호로 구상금 4,539,030원(=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70,410원 +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68,62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1. "C는 원고에게 4,53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6.부터 2002. 5.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2. 2. 2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뒤 C는 2017년경 원고에게 제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756,715원, 제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204,51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5)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잔액은 2020. 12. 3. 기준으로 12,630,360원[= 제1 보험계약 관련 구상금 6,221,900원(= 원금 413,695원 + 지연손해금 5,808,205원) + 제2 보험계약 관련 구상금 6,408,460원(= 원금 164,110원 + 지연손해금 6,244,350원)]이다.

6) C는 2017. 5. 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항변은 이유 없다.

① C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부동산공인중개사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C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C의 아버지인 E이 2011. 8. 2. 이 사건 부동산을 7,300만 원에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민수

별지